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623 제출연월일: 2024. 12. 1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 감염병환자, 군 감염병의심자,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군 감염병환자 등에대한 예방·관리·치료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·제출을 요청하거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법령·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(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2제5항).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"군감염병환자등"이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 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인 군인등을 말한다.
- 6. "군감염병의심자"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인 군인등을 말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감염병"을 "감염병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. 이하 같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"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제2항"을 "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4제2항"으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) ①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감염병예방·관리·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·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군감염병환자등, 군감염병의심자, 군보건의료인, 의약품, 장비 및 시설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(이하

- "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방부장관은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·관리·보유·처리할 수 있으며,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1. 군감염병환자등·군감염병의심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) 등 인적사항
- 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,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(군감염병환자 등·군감염병의심자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)
- 3. 군감염병환자등·군감염병의심자의 감염병에 대한 치료내용 및 예 방접종 내용
- 4. 그 밖에 군감염병환자등·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·관리·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
- ③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군감염병환자등·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·관리· 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.
- 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 종통합관리시스템

- 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 관리통합정보시스템
- 3. 「검역법」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따른다.
- ⑤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 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"군감염병환자등"이란 「감
	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
	법률」 제2조제13호부터 제15
	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
	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
	원체보유자인 군인등을 말한
	<u>다.</u>
<u><신 설></u>	6. "군감염병의심자"란 「감염
	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
	률」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
	병의심자인 군인등을 말한다.
제12조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)	제12조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)
① 국가는 군에서의 <u>감염병</u> 발	① <u>감염병(「감</u>
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그 예방	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
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	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
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	<u>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	③
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바에 따라 매년 예방접종계	
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방점종	

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 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의 통 합관리를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 조의2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유하 여야 하며, 공유의 절차,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④ (생략)

<신 설>

		「감염병	의 예
<u>방 및 관</u> 급	믜에 관현	<u></u> 법률」	제33
조의4제2학	항		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2(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 템) ①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감염병 예방·관리·치료 업무 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 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・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군감염 병환자등, 군감염병의심자, 군 보건의료인, 의약품, 장비 및 시 설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(이하 "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・운영할 수 있다. ② 국방부장관은 군감염병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・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 집 · 관리 · 보유 · 처리할 수 있 으며,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

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1. 군감염병환자등 · 군감염병의 심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) 등 인적사항
- 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부터 제14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,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 된 자료(군감염병환자등·군 감염병의심자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)
- 3. 군감염병환자등 · 군감염병의 심자의 감염병에 대한 치료내 용 및 예방접종 내용
- 4. 그 밖에 군감염병환자등·군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· 관리·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 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
- ③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

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 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군감염병환자등 · 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 · 관리 · 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.

- 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

 관한 법률」 제33조의4에 따

 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
- 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5에 따 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
- 3. 「검역법」 제29조의2에 따 른 검역정보시스템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시스템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따른다.
- ⑤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 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